

특수건물은 국가방재 측면에서 개방대상이 될 수 없다



李 大 鎔
(본협회 이사장)

금융개방의 물결을 한사코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금융업은 타업종에 비하여 문을 늦게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물며 제2금융권에 속하는 보험사업은 그 문을 여는데에 여러가지 여건상의 문제 등으로 가장 뒤늦게 따라가고 있으며 특히 자국의 보안유지와 이익에 필요한 강제보험 등과 같은 정책 보험은 개방하지 않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다.

지난 81년부터 84년 까지 4개년 간에 걸쳐, 경쟁성이 없는 금융기관 담보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Pool을 해체개방한 결과만을 보더라도, 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는 조그만 도움도 없이 “보험계약조건부 강제예금”의 타격등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 문제만 야기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일반국민에게도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보험선진국의 경우에도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보험 Pool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서독의 경우를 보면 18세기부터 화재에 대한 위험관리와 보험업무를 공영기관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취급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같이 국가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보험 Pool은 개방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게 세계적인 통념이다.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등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2개손보사만은 화재보험 Pool해체개방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법으로 전국 7대도시에 소재한 화재위험이 높은 4층이상, 호

텔, 시장 등 특수건물에 대하여 강제보험으로 지정해 놓은 화재보험업무와 안전점검업무를 주관하면서, 여기에서 받아 들인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운영경비로 떼고 나머지는 일반손해보험회사에 나눠주어 위험을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Pool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방재서비스 활동 등 방재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방재사업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욱 필요하고 불가 결한 중요업무이다. 미국만 해도 이러한 방재기관이 71개나 있고, 캐나다는 20개, 일본은 9개가 있다.

강제성 화재보험Pool을 해체하라는 얘기는 국가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곧 바로 방재업무를 포기하고 위험상태에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현재 화재보험Pool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보험료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이같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재보험Pool을 놓고 외국회사들이 개방요구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되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화재보험Pool은 상당한 보안이 요구되는 측면이 강하다. 국가재산과 방위산업체 등의 보험업무와 위험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할 성질이 못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형 위험물건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 차원에서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Pool형태의 기관으로서 IRI (Industrial Risk Insurers), AHIS (American Hull Insurance Syndicate) 등 수10여개가 있다. 미국은 Pool이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하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러한 Pool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화재보험 Pool은 법률에 따라 발족·운영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현재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방재사업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7대도시에 소재한 4종이 상건물, 국유건물, 시장,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에 관한 시설안전점검, 위험도분석업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밖의 건물(특히 대형화재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대단위공장 등)에 대해서도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화재위험의 진단 및 위험도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미국의 U/L과 같은 “방

재시험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방재는 바로 국가안보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제2차 대전시 독일의 공격에 영국의 피해가 적었던 것도 이 같은 방재조직이 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재활동은 법적인 뒷받침으로 10여년간 경험을 쌓아, 이제 막뿌리를 내리려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러한 때에, 국가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법으로 강제화 한 화재보험Pool(즉 정책보험)을 놓고 개방여부를 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정부와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인 것이다.

한편으로 법적 뒷받침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방재활동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보험과 위험을 가장 이상적으로 연계시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방재전문가들 조차 무척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이러한 화재보험Pool이 해체, 개방된다면 이 같은 방재활동이 붕괴되어 원점으로 후퇴현상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보험취급기관의 다원화등으로 보험료의 할인기대가 곤란해져서 결국 국민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이재발생시 피해복구를 위한 보상등의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보험의 인수취급에 따른 국가보안유지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내회사들의 담보력 취약으로 인한 외국회사의 국내손보시장 잠식의 가속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보험Pool은 어느 나라도 간에 주변여건상 존재하게 마련이고 이에 대해서는 자국의 기밀보호와 이익을 위해 개방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的 화재보험Pool이 개방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